

# 대학원학칙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시행세칙 전문

2011. 3. 1. 제정  
2012. 3. 1. 개정  
2013. 3. 1. 일부개정  
2013. 9. 1 개정  
2014. 3. 1 개정  
2015. 3. 1 개정  
2016. 3. 1 개정  
2016. 9. 1 개정  
2017. 3. 1 개정  
2020. 9. 1 개정  
2024. 3. 1 일부개정  
<기술경영전문대학원>

제1조(목적) 이 세칙은 본교 대학원학칙(이하 "학칙"이라 함)이 기술경영전문대학원(이하"대학원"이라 함)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교육목표) 본 대학원은 미래 기술경영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세계 수준의 창의적 기술경영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한다.

제3조(등록 및 등록금) ① 등록은 매학기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함으로써 완료된다.  
② 등록금의 액수 및 납입기일은 매학기 시작 전에 공시한다.  
③ 기본 수업연한인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2년까지는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한다.

제4조(재학연한) 재학연한은 학위청구논문 제출기한 내에서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.

제5조(수강신청) ① 수강신청은 매학기 지정된 수강신청 기일 내에 당해 학기에 이수하고자 하는 교과목을 신청하여야 한다.  
② 다른 대학원과 공동 개설한 교과목의 수강은 학과주임교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 
③ 본 대학원에서 개설하는 교과목을 석사과정 학생은 2학기, 박사과정 학생은 3학기 동안 매학기 3학점 이상을 수강하여야 한다.  
④ 본교 타대학원과의 학점교류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학과 주임교수의 승인을 얻어 신청할 수 있으며, 제7조의 학점인정 범위를 초과하여 수강 신청할 수 없다.  
⑤ 학사학위과정 또는 다른 대학원과 공동 개설한 교과목 및 학점교류협정을 체결한 타 대학원 교과목의 수강은 학과 주임교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6조(수강신청 정정) 이미 수강 신청한 교과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강신청 정정기간에 변경할 수 있다.

제7조(학점인정) ① 삭제 <2024. 3. 1.>  
② 재학기간 중 전공분야에 관한 연구의 필요에 따라 지도교수의 제청과 학과주임교수 및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국내 또는 외국의 타 대학교나 연구기관에서 연수할 수 있으며, 본 대학원 이외에서 취득한 학점은 석사과정은 6학점, 박사과정은 9학점까지 이를 인정받을 수 있다. 다만, 학술교류협정에 따른 학점인정에 대하여는 따로 정한다.

- ③ 연구과정을 수료한 자가 석사과정에 입학하였을 경우 연구과정에서 이수한 과목 중 학과주임교수가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과목에 한하여 그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.
- ④ 상호 학점교류를 협약한 본교의 다른 대학원에서 개설한 교과목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 석사과정은 6학점, 박사과정은 9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.

제8조(학점교류) ① 재학기간 중 전공분야에 관한 지도교수의 제청과 학과주임교수 및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학기 당 6학점 범위 안에서 수강 할 수 있으며, 졸업 시까지 통산 석사과정은 6학점, 박사과정은 9학점을 초과 할 수 없다.

② 학점교류 시행에 따른 세부사항은 상호 학점교류를 하고자 하는 대학원간의 합의에 의한다.

제9조(복수학위: 협정체결) 복수학위를 위한 협정체결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하며, 본 대학원과 교류대학원 간 협정서를 작성한다.

제10조(복수학위: 학위수여) 협정서에 명시된 사항과 양원에서 요구하는 복수학위 취득요건을 충족한 경우 협약에 따라 복수학위를 수여하며, 기타 세부사항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11조(이수지정과목) ① 이수지정과목(이하 "선수과목"이라 함)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은 본 대학원에서 지정하는 선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. 다만, 선수과목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은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에 포함되지 않으며 학과주임교수의 승인 또는 선수과목 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면제 받을 수 있다.

② 선수과목 이수자는 이수과목을 포함하여 학기당 18학점까지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교수의 승인을 얻어 이수할 수 있다.

제12조(교육과정) 학칙 제24조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개설 교과목당 수강인원은 3인 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.
2. 유사과목의 중복 개설을 지양하고, 유사한 성격의 과목은 이를 통합 활용하도록 한다.

제13조(수료의 방법과 요건) ① 학위과정 수료를 위하여 석사과정의 학생은 45학점, 박사과정의 학생은 36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.

- ② '연구지도'를 매학기 2학점씩 이수해야한다.
- ③ 박사과정의 경우, 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
- ④ 수료에 필요한 추가 운영사항은 따로 정한다.

제14조(졸업의 방법과 요건) ① 학위취득을 위하여 이 세칙 제13조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.

② 졸업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과정 및 학과별 내규로 정한다.

제15조(수료연구생) ① 수료연구생은 해당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매학기 소정의 "등록" 및 "수료연구지도"를 수강하고 있는 학생으로 학위를 취득할 때까지 매학기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
② 수료연구생에게는 일반대학원 시행세칙의 수료연구생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.

제16조(지도교수 위촉) ① 원장은 학생의 의사를 참작하여 지도교수 위촉일 이전 3년간 SCIE급 국제저명학술지나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에 1편 이상 논문을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게재한 본교 교원을 지도교수로 위촉한다.

② 지도교수는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소속 전임교원 중에서 위촉한다. <개정 2024. 3. 1.>

③ 지도교수의 요청에 따라 공동지도교수 1인을 추천할 수 있다. 공동지도교수는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소속 전임교원과 본교 타 학과 소속 전임교원 중에서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위

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. <개정 2024. 3. 1.>

④ 지도교수 배정의 세부절차는 「기술경영전문대학원 일반운영 내규」 제21조를 따른다.  
<신설 2024. 3. 1.>

제17조(지도교수 변경) ① 지도교수의 퇴임, 휴직, 해외여행 및 그 밖의 사유로 1년 이상 연구 및 논문지도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한다.

②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도교수변경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18조(학위청구 자격) ① 석사과정에서 45학점 이상을 평균평점 3.0이상으로 취득 또는 취득예정인 자는 석사학위청구 논문 또는 석사학위청구 연구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.

② 박사과정에서 36학점 이상을 평균평점 3.0이상으로 취득 또는 취득예정이고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는 박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.

③ 석사과정, 박사과정 모두 최소 4학기 이상 등록해야한다.

제19조(학위청구논문 제출의 연한) 학위청구논문은 입학년도로부터 석사학위과정은 6년, 박사학위과정은 10년이 경과한 후에는 제출 할 수 없다.

다만, 군복무, 출산휴학, 기타 본 대학원 대학원위원회에서 그 사유를 인정받은 기간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제20조(학위청구논문 작성 용어) 논문은 국문 또는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다. 다만, 논문이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국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.

제21조(논문심사위원회) ① 석·박사학위 논문심사는 대학원장이 지정하는 석·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회가 행한다.

② 석사학위 논문심사위원회는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본교 교수 또는 그 분야의 권위자 중 3인 이상을 선정하여 구성하고, 그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합격을 결정하며,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회는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본교 교수 또는 그 분야의 권위자 중 5인 이상을 선정하여 구성하고, 심사위원 5분의 4 이상의 찬성으로 합격을 결정한다.

③ 대학원장은 전항의 위원 중 지도교수를 심사위원장으로 지정하여 심사의 진행을 주재할 수 있게 한다. 다만, 위원은 심사에 있어서 동등한 자격을 갖는다.

④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회는 소정의 기일 내에 논문심사를 완료하고, 심사위원장은 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대학원장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제22조(논문심사) ① 학위 논문의 심사방법은 1차로 논문내용의 타당성과 적격성을 심사한 후 2차로 공개구술시험을 과한다.

② 논문의 최종심사는 합격, 불합격으로 판정한다.

제23조(학위수여 심의)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원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제24조(장학금) ① 입학성적이 특히 우수하거나 재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또는 연구비를 보조할 수 있다.

② 장학금 지급이나 연구비 보조결정은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교수 추천에 의하여 본 대학원 대학원위원회에서 행한다.

제25조(공개강좌) ① 본 대학원은 필요에 따라 공개강좌를 개설하고 이수자에게는 이수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.

② 공개강좌의 명칭 또는 교과목 개설기간, 장소 및 수강정원 등에 관한 사항은 개설 때마다 대학원장이 이를 정한다.

제26조(연구생) ① 본 대학원이 개설하는 특정 교과목 또는 과제에 관하여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연구생으로 입학할 수 있다.

② 연구생은 석사학위과정 지원 자격과 같으며 본 대학원이 실시하는 전형에 합격한 경우에 입학할 수 있다.

제27조(연구기간 및 연구과제) ① 연구생의 연구기간은 1년으로 한다.

② 연구과정의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일람에 의한다.

제28조(계약학과) 본 대학원의 계약학과는 대학원 학칙 및 일반대학원 시행세칙을 준용한다. 다만, 수업연한은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와의 계약조건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.

제29조 삭제 <2024. 3. 1.>

제29조의2(일반운영)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, 합리적이고 원활한 대학원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일반운영 내규를 정한다. 자세한 내용은 「기술경영전문대학원 일반운영 내규」를 따른다. <본조 신설 2024. 3. 1.>

제29조의3(학사운영) 본교 학칙 및 「기술경영전문대학원에서 시행세칙」에서 정한 학사운영 관련 사항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학사운영 내규를 정한다. 자세한 내용은 「기술경영전문대학원 학사운영 내규」를 따른다. <본조 신설 2024. 3. 1.>

제30조(준용) 기타 이 세칙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원 학칙 및 일반대학원 시행세칙을 준용한다.

부 칙

이 시행세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 (제7조 제4항 신설 및 제7조 제3항, 제11조, 제13조, 제17조 제2항, 제17조 제4항 개정)

부 칙

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 (제4조, 제8조 제3항 삭제)

부 칙

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 (제17조 제4항 개정)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 (제3조, 제11조, 제12조, 제13조 신설 및 제5조 4항, 제8조 1항, 제16조, 제17조 개정 및 제5조 6항 삭제)
2. (경과조치) 제13조의 수료연구생은 2015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(제5조 제4항, 제7조 제4항, 제8조 제1항 개정 및 제11조 제4항, 제12조, 제20조 제3항 신설)
2. (경과조치) 제20조 제3항은 2016학년도 전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 (제7조 제4항 개정)
2. (적용대상) 2016년 9월 입학자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 (제9조, 제10조 신설, 제4조, 제7조 제2항 개정, 제9조 내지 제31조 조번호 변경, 제18조 제3항 개정)

부 칙

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 (제7조 제2항 개정, 제8조 제1항 개정, 제13조 제3항 개정, 제16조 제1항 개정, 제18조 제1항 개정, 제26조 개정, 제20조 삭제, 제22조 내지 제23조 삭제, 제21조 조 번호 변경, 제24조 내지 제33조 조 번호 변경)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시행세칙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 (제7조 제1항 삭제, 제16조 제2항 내지 제3항 개정, 제16조 제4항 신설, 제29조 삭제, 제29조의 2 내지 3 신설)
2. (경과조치) 제7조 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적용한 것으로 본다.